

# 남양주시 어르신 인생노트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694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22. 3. 10.

제 출 자 : 남양주시장

## 1. 제안이유

- 삶을 의미 있게 마무리하고자 하는 노인들의 욕구와 주체적 죽음준비에 대한 관심은 증가하였으나 그에 대한 준비 실태는 미비하여
- 웰다잉에 대한 사회적 욕구와 제도적 필요 등을 반영하여 2022년부터 <남양주시 어르신 인생노트 사업>을 추진하고자
- 「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에 따라 시의회 동의안을 제출함.

## 2. 관련 근거

- 「노인복지법」 제4조(보건복지증진의 책임)
- 「남양주시 웰다잉(Well-Dying)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」
- 「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)제3항

## 3. 주요내용

- 사업 개요
  - 사업 명 : 남양주시 어르신 인생노트 사업
  - 사업대상 : 관내 만 60세 이상 어르신 (300명 내외)

- 사업량 : 관내 수행기관 3개소
- 추진방법 : 시·군 보조 (민간위탁)
- 소요예산 : 60,000천원(도비30% 18,000천원, 시비70% 42,000천원)
  - ※ 수행기관 당 20,000천원 × 3개소 = 60,000천원
- 주요내용 : 웰다잉 교육 및 인생노트 작성 프로그램 위탁운영
  - 웰다잉 교육 : 남은 생의 중요성과 웰빙의 방향 제시
  - 인생노트 : 지난 삶과 남은 생애에 대한 자신의 이야기 기록

#### 4. 위탁신청자 자격 요건

- 노인복지 관련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 등

#### 5. 기대효과

- 노년기 삶을 의미 있게 마무리 할 수 있는 웰다잉(Well-Dying) 문화 확대
- 죽음에 대한 긍정적 준비를 통해 어르신들의 노년기 삶의 질 향상

#### 6. 향후계획

- '22. 04. 04. ~ 15. : 수행기관 공모
- '22. 04. 18. ~ 20. : 신청서 접수
- '22. 04. 26. : 수탁기관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(일정에 따라 변경가능)
- '22. 05월 ~ 12월 :
  - 웰다잉 교육 및 인생노트 작성 프로그램 실시
  - 웰다잉 인식도 및 성과평가 조사
  - 참여대상자 만족도 조사
- '23. 01월 : 프로그램 운영 결과 및 사업 정산 보고 (시·군 → 도)

[시행 2021.07.29]

(제정) 2021.07.29 조례 제1871호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웰다잉(Well-Dying) 문화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웰다잉(Well-Dying) 문화”란 죽음을 사전에 스스로 준비하고 삶을 정리해보는 임종 준비 및 장례 문화 등을 말한다.
2. “인생노트”란 자서전 및 자신의 가족관계, 병력, 장례절차, 재산관계, 남은 생애에 대한 자신의 의견 및 희망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도록 제작하는 기록물을 말한다.
3. “유품정리”란 사망자가 생전에 사용하던 물건과 거주지에 대한 정리, 청소 보관 및 처분 등의 행위를 말한다.

**제3조(시장의 책무)** 남양주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하여 남양주시민(이하 “시민”이라 한다)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4조(기본계획)** ①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남양주시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웰다잉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
2.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
3. 웰다잉 문화조성 인식조사에 관한 사항
4.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
5. 웰다잉 문화 홍보에 관한 사항
6.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

는 사항

**제5조(사업추진)**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인생노트 제작 및 보급 사업
2. 유품정리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사업
3.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지원 사업
4.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전문가 양성 사업
5.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**제6조(예산지원)** ① 시장은 웰다잉 문화 관련 비영리법인, 단체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, 방법 및 조건 등은 「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**제7조(인식조사)**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남양주시 임종문화에 대한 인식조사를 할 수 있다.

**제8조(교육 및 홍보)** ①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민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과 관련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경우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제작·배포할 수 있다.

**제9조(비밀의 유지)** 이 조례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.

**제10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.

**부 칙 <조례 제1871호, 2021. 7. 29.>**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